

『2024 경북 청년애(愛)꿈 수당』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(변경)

경상북도와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통해 고용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등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『경북 청년애꿈 수당』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4년 9월 19일

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

I 사업개요

- 사업명: 2024 경북 청년애꿈 수당 지원사업
- 신청기간: 2024. 9. 19.(목) ~ 예산소진 시까지
- 신청방법: 온라인 접수(<https://gbwork.kr> 또는 청년애꿈수당.kr)
- 지원규모
 - 면접수당(215건)
 - 도내 중소·중견기업 면접 시 7만원 지원(최대 5회)
 - 취업성공수당(51명)
 - 도내 중소·중견기업 생애 최초 취업 시 50만원 지원(1인 1회)
 - 근속장려수당(231명)
 - 도내 중소·중견기업 1년 이상 재직 시 120만원 지원(1인 1회)

II

지원내용

구 분	면접수당	취업성공수당	근속장려수당
지원대상	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19세 ~ 39세 미취업 청년	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19세 ~ 39세 취업 성공 청년	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19세 ~ 39세 중소기업 재직 청년
지원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3. 12. 31.까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미취업 청년 - 2024. 1. 1. 이후 공식적인 채용 공고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에 면접을 응시한 자 ※ 워크넷, 경북일자리종합센터, 지역신문 등 - 면접일 기준 미취업, 미창업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※ 취업 후 3개월 이내 경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신청 가능 - 2023. 1. 1. 이후 도내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 취업한 청년 ※ 취업 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-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- 월소득 2024년 최저임금 이상 ~ 기준중위소득 150%(3,342,668원) 이하인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2. 12. 31.까지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현재 재직 중이며 계속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청년 -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- 월소득 2024년 최저임금 이상 ~ 기준중위소득 150%(3,342,668원) 이하인 자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면접 1회당 7만원 지급 ※ 1인 최대 5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0만원 지급 ※ 1인 1회 한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20만원 지급(분기별 30만원씩) ※ 1인 1회 한정
지급일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일의 익월 말일경 지급 (+, - 10일 이내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일의 익월 말일경 지급 (+, - 10일 이내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상 선정 후 매분기 지급 월의 말일경 지급(+, - 10일 이내)
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선정대상자에 한함			
신청서류	(공통서류) 1. 부정수급약약서 1부 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 1부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민등록초본 1부 2. 면접확인서 1부 3. 채용공고문 1부 4. 통장사본 1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민등록초본 1부 2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산정금액 (사진 또는 캡처) 각 1부 3. 근로계약서 1부 4.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 5. 통장사본 1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민등록초본 1부 2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산정금액 (사진 또는 캡처) 각 1부 3.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1부 4.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 5. 통장사본 1부
제출일자	신청 시 제출	신청 시 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최초 신청시) 모든 구비 서류 제출 2. (매분기)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
유의사항	<p>VI.유의사항(공고문 8페이지 참조)은 필독 사항이며 선정대상자가 이를 위반할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</p>		

□ 제외대상(공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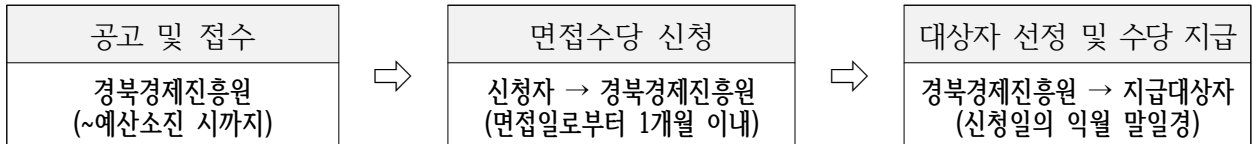
- 청년애꿈수당 기 참여자(단, 면접수당 제외) 또는 중앙정부,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
 - ※ 반환, 철회 등으로 실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
-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자
 - ※ 수당별 공고일 전 참여완료(사업종료)된 경우 신청 가능
-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*에 참여 중이거나, 참여 완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**(※ 면접수당 제외)
 - *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, 행복카드 지원사업
 - ** 공고일 기준 사업 참여완료(사업종료)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참여 가능
- 월 급여총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(3,342,668원)를 초과한 자
-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
- 현역 보충역(군인, 사회복지무요원, 전문연구·산업기능요원 등)
- 국가근로장학생(한국장학재단) 참여 중인 자
 - ※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(희망사다리 I)수혜자,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등
- 임금으로 보기 힘든 성과급 위주 지급 직종 참여자*
 - * 다단계 판매업, 학습지 교사, 보험설계사 등
-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직 또는 퇴사한 자(면접수당 제외)
- 기타 경북 청년애포꿈 수당 사업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

제외(제한)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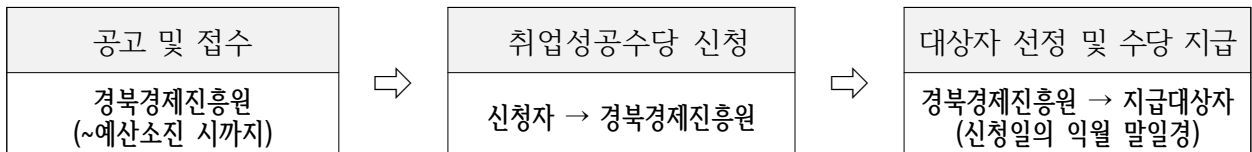
- ① 소비·향락업
 - 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 제5호의 ‘청소년유해업소’
 - 「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」 제2조
 -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」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(복권발행업, 현상업, 회전판 돌리기업, 추첨업, 경품업 등)
- ②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
 -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: 어린이집, 관리사무소 등
 - 비영리법인 및 단체, 조합, 협회: 「민법」·「특별법」에 따른 종교법인, 의료법인, 학교법인, 사회복지법인, 재단법인, 비영리특별법인 등
 -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‘외국 법인’
- ③ 3개월 미만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
- ④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
 - 일반유희 주점업, 무도유희 주점업, 기타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
- ⑤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공기업 등
- ⑥ 「초·중등 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

Ⅲ 지원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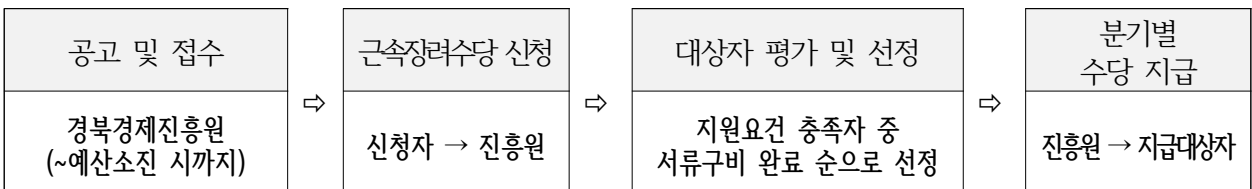
□ 면접수당



□ 취업성공수당



□ 근속장려수당



※ 사업 일정은 운영 및 진흥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.

IV

신청방법

※ 서류 미제출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

- 신청기간: 2024. 9. 19.(목) ~ 예산소진 시까지
- 신청방법: 온라인 접수(<https://gbwork.kr> 또는 [청년애꿈수당.kr](https://www.yongin.go.kr))
- 신청서류 (※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유효하게 인정)
 - 공통서류

구 분	신청서류	세부내용
1	부정수급확약서	- 신청 시 자동 제출(별도의 제출과정 없음)
2	개인정보수집이용활용동의서	

○ 면접수당

구 분	신청서류	세부내용
1	주민등록초본	- 경상북도 거주 확인 -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※ www.gov.kr 발급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
2	면접확인서	- 확인서 상의 모든 내용 기재 필수 - 기업담당자의 직인 또는 자필서명 필수
3	채용공고문	- 기업명, 모집기간, 모집분야 등이 명시된 공고문
4	통장사본	- 수당 입금 통장 - 본인 명의의 거래 가능한 통장 사본 제출

○ 취업성공수당, 근속장려수당

구 분	신청서류	세부내용
1	주민등록초본	- 경상북도 거주 확인 -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주민번호 뒷자리 등 포함 전체이력 발급 ※ www.gov.kr 발급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
2	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	- 지역 및 직장가입자, 전체이력 -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
3	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	- 2024년 전체 납부 이력, 중위소득 확인 -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
4	건강보험료 산정금액 (사진 또는 캡처)	- 2024년 전체 납부 이력, 사업장 명칭 및 취득일 포함 전체 페이지 사진 또는 캡처, 급여 확인 -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※ 보험료 조회/신청 → 직장보험료 조회 → 개인별 상세조회 부분 사진 또는 캡처
5	근로계약서	- 취업성공수당 신청자 제출서류 - 중위소득, 근로조건, 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등 확인
	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	- 근속장려수당 신청자 제출서류 - 입사일 및 현재 재직 유무 확인
6	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	-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·중견기업 여부 확인 ※ 근무처에서 발급, 유효기간 확인 필수 - 중소기업확인서 문의(sminfo.mss.go.kr) - 중견기업확인서 문의(mme.or.kr)
7	통장사본	- 수당 입금 통장 - 본인 명의의 거래 가능한 통장 사본 제출

V

대상자 선정

□ 선정방법

- 면접수당: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자격요건 충족 시 선정
- 취업성공수당, 근속장려수당: 자격요건 충족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에 대한 서류 검토를 통해 지원 적격성 심사 후 선정

□ 심의위원회

- 평가방법: 정량 평가(100점), 가점(5점)
- 평가내용: 참여조건 및 자격 적정성 여부 평가
- 평가방법

구 분	구 간	점 수	구 분	구 간	점 수
월 소득	~ 210만원 미만	50	경북 주소 유지기간	10년 이상	50
	210만원 ~ 240만원 미만	40		7년 ~ 9년	40
	240만원 ~ 270만원 미만	30		5년 ~ 7년	30
	270만원 ~ 300만원 미만	20		3년 ~ 5년	20
	300만원 ~ 중위소득 150% 이하	10		3년 미만	10
※ 취업취약계층 가점(5점) ※ 동점의 경우 월 소득이 낮은 자 우선 선정					

□ 면접수당

- 동일일자 다수 기업 면접 시 1회만 인정
- 동일기업에서 날짜를 달리하여(1, 2차 면접 등) 면접 시 1회만 인정(기업당 1회 인정)
- 제외대상
 - 재직 중인 자
 - 국민취업지원제도, 실업급여, 기타 구직활동 수당 등 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자
 - 취업 의사 없이 수당을 위한 목적으로 면접에 지원하는 자
 - 제출서류 미충족자, 사업의 운영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자 등

□ 취업성공수당

- 별도의 소득 활동이 없는 미취업 상태에서 2023. 1. 1. 이후 도내 중소·중견기업에 생애 최초 취업한 자
- 주4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(인턴 또는 아르바이트)는 취업 미경험자로 인정
 - ※ 인턴 또는 단순 아르바이트 경험자는 별도의 증빙자료(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, 계약서 등) 제출 시 취업 미경험자로 인정
- ※※ 해당사항은 자격요건 외 추가적인 인정항목이므로 해당 건과 관련된 소명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(별도의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음)
- 경북 외 지역의 취업 유경험자이지만 도내 생애 최초 취업인 경우 지원 가능
- 제외대상
 - 주 4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(2024년 최저임금 2,060,740원 이하인 자)
 - 중앙정부, 타 지자체 사업 중 취업성공수당 유사사업(국민취업지원제도, 취업성공패키지,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)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
 - 한국장학재단 사다리장학금(고교 취업연계장려금,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 등)에 참여 중인 자

- ※ 단, 사업종료 및 의무종사 기간이 종료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(2024. 1. 1. 기준)
- 제출서류 미충족자, 사업의 운영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자 등

□ **근속장려수당**

- 지원기간 중 참여자격(거주지, 고용유지 등) 미충족자는 지급을 즉시 중단하며 부당 지급이 확인될 경우, 즉시 환수조치

※ 단, 부득이한 사유*로 이직 또는 실직한 경우, 도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재취업 시 잔여기간 동안 지급

* 부득이한 사유란 참여기업의 휴·폐업 도산으로 이직 또는 실직한 경우를 말하며, 재취업을 할 경우에도 예산소진 시 미지급

○ **제외대상**

- 주 4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(2024년 최저임금 2,060,740원 이하인 자)
- 중앙정부, 타 지자체 유사사업(근속 유도사업, 청년(재직자)내일채움 공제,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)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

※ 단,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혜를 받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(자격여부 파악을 위한 추가 서류 必)

- 한국장학재단 사다리장학금(고교 취업연계장려금,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)에 참여 중인 자

※ 단, 사업종료 및 의무종사 기간이 종료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(2024. 1. 1. 기준)

- 사업참여(선정 및 등록) 이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(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)참여가 영구히 불가할 수 있으며, 본 사업 참여이력 삭제 불가

- 타 유사사업의 사업별 규정이 본사업 규정과 상이할 수 있어 관련 내용은 타 유사사업의 운영기관에 문의 후 지원

□ **유의사항(공통)**

-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,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
- 상기 유의사항, 공고 및 기준 등의 미숙지, 제출서류 미비,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

일체 신청자에게 있음

-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기를 바라며,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
-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 되면 선정대상에서 제외, 지원금 환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음
-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하며, 불응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
- 선정 후 근속 확인을 위한 자료, 현장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음
- 선정자는 사업종료 시까지 공고문의 자격요건 및 지원대상과 일치하여야 함
-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사업 신청 후 미선정 될 수 있음
- 제출된 신청서류와 관련된 행정적, 재정적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자에게 있음
- 공고문 내용 및 유의사항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해석에 따름

Ⅵ 문의처

-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
 - 주소: 39393,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
 - 전화: 054-470-8567, 8595
 - 메일: zihyeon@gepa.kr